

판 결

사 건

[REDACTED]

원 고

[REDACTED]

[REDACTED]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유

담당변호사

[REDACTED]

피 고

1.

[REDACTED]

최후주소

[REDACTED]

2.

[REDACTED]

최후주소

[REDACTED]

3.

[REDACTED]

최후주소

[REDACTED]

변 론 종 결

[REDACTED]

판 결 선 고

[REDACTED]

주 문

1. 피고 [REDACTED]는 원고에게,

가. 별지1 표시 부동산을 인도하고,

나. 1,480,000원과 이에 대하여 [REDACTED]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

산한 돈을 지급하고,

다. [REDACTED]부터 위 가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,26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피고 [REDACTED] [REDACTED]은 각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라.
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4. 제1,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